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 - 401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2024. 3. 27.)를 하였으나, 공고기간이 부족하여 기간을 산입하고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공고기간 정정)합니다.

2024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기간 정정)

1. 개정이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의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독립유공자 및 의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정책을 서울시 조례와 일원화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의 요금(별표1)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유족증)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 주차요금 100분의 80 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의사상자증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 주차요금 100분의 80 할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주차관리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중구청), 문의전화: 3396-6264, FAX: 3396-8873, 메일: rokaff@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중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시한 자”를 “제시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중 “소지한 자”를 각각 “제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유족증)을 제시한 사람

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u>라. < 신설 ></u></p> <p><u>마. < 신설 ></u></p>	<p><u>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유족증)을 제시한 사람</u></p> <p><u>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의사상자증을 제시한 사람</u></p>